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1. 12. 1 선고 2021가단76689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전남신용보증재단

소송대리인 변호사 서희원

피 고 1. A

2. B

변 론 종 결 2021. 9. 15.(피고 A에 대하여) 2021. 11. 3.(피고 B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21. 12. 1.

주 문

1. 피고 A은 원고에게 13,203,931원과 그중 13,200,629원에 대하여 2021. 5. 28.부터 2021. 7. 13.까지 연 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들 사이에 2020. 7. 9.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 B는 피고 A에게 2020. 8. 11. 이 법원 고등등기소 접수 제157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 채권

원고는 2019. 5. 9. 피고 A과 신용보증원금 3,000만 원, 신용보증기한 2022. 5. 7.로 정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행하였다.

피고 A은 2019. 5. 9.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은행으로부터 3,000만 원을 대출받았다.

피고 A이 2021. 2. 9. C은행에 원리금 상환을 연체하자, C은행은 2021. 3. 5. 원고에게 신용보증사고통지를 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1. 5. 27. 피고 A을 대위하여 C은행에 합계 13,394,489원을 변제하였다.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피고 A이 원고에게 지급할 나머지 원금은 13,200,629원, 손해금은 3,302원이다. 원고가 정한 약정손해금율은 연 9%이다.

나. 피고들의 매매계약

피고 A은 2020. 7. 9. 피고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20. 8. 11. 피고 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피고 A의 재산상태 등

피고 A은 2020. 2. 20.경 C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돈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였고, 당시 금융기관에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2,000만 원의 채무가 추가로 발생하였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A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에서 8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 A은 원고에게 원고의 대위변제금 등 합계 13,203,931원(=대위변제금

13,200,629원+손해금은 3,302원)과 그중 원금 13,200,629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대위변제금 다음 날인 2021. 5. 28.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인 2021. 7. 13.까지 약정손해금율인

연 9%,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를 근거로 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37821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원고가 C은행에 위 피고의 대출금을

대위변제한 2021. 5. 27. 발생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미 구상금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인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었고, 피고 A은 2020. 2. 20. 이 사건

대출금으로 운영하던 사업을 폐업하였고 그 당시 금융기관에 1,000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이 사건 부동산이 피고 A의 유일한 재산이라는 점을 보태어 보면 가까운 장래에

구상금채권이 발생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피고 A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7개월이 지난 2021. 2. 9. 위 대출원리금을 갚지 못하여 결국 원고가 2021. 5. 27.

C은행에 대출금을 대위변제함으로써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여 위 개연성이 현실화되었으므로, 원고의

피고 A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성립과 수익자의 악의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참조). 나아가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에 의하여야 하고, 채무자나 수익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 잡아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5. 6. 11. 선고 2014다237192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피고 A이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B에게 매도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꾼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 A의 사해의사는 인정되며, 수익자인 피고 B의 악의도 추정된다.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피고 A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고 A에게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이므로, 피고 B는 선의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나 1호증에 의하면 피고 B가 2020. 8. 6. 피고 A에게 2,5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 B가 매매대금 중 계약금 300만 원과 잔금 중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영수증(을나 3호증)은 그 작성 일자가 각 ‘2021. 7. 9.’과 ‘2021. 8. 6.’로 기재되어 있는 점, 같은 날인 2020. 7. 9. 작성된 매매계약서(을나 4호증)와 영수증(을나 3호증, 작성일 ‘2021. 7. 9.’을 ‘2020. 7. 9.’ 옳기로 선행)에 찍힌 매도인 피고 A의 도장이 서로 다른 점, 피고 B가 2020. 8. 6. 피고 A에게 잔금 2,700만 원을 지급하면서 그중 2,500만 원은 계좌이체 방법으로, 200만 원은 현금으로 나누어 지급하였다는 것은 일반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이해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을나 1, 3, 4호증만으로는 피고 B의 악의 추정을 뒤집고 선의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B의 선의 항변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B는 피고 A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판사 유재현

부동산 목록

1.[토지] 전라남도 고흥군 대 188㎡

2.[건물] 전라남도 고흥군

[도르명주소] 전라남도 고흥군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단층주택 82.6㎡

